

■ 행정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 - 개정(2022.03.28.)

현 행 조 . 항	개 정 (안) 조 . 항	비 고																	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행정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(이하 "내규"라 한다)는 학칙 또는 학칙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"좌 동"</p>																		
<p><b>제2조(졸업논문 대체)</b> 졸업 종합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한다.</p>	<p><b>제2조(졸업논문 대체)</b> 졸업 종합시험(이하 "시험"이라 한다)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.</p>	임의규정으로 변경																	
<p><b>제3조(시험시기)</b>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(시험)대상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,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.</p> <p>① 전기 졸업예정자 : 매년 12월 초 ② 후기 졸업예정자 : 매년 6월 초</p>	<p><b>제3조(논문제출시기)</b>----- ----- ① 전기 졸업예정자 : 매년 10~11월 ② 후기 졸업예정자 : 매년 4~5월</p>	졸업시험을 논문으로 변경  원활한 학사업무 처리를 위한 시기 변경																	
<p><b>제4조(시험면제)</b>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다.</p> <p>① 7학기 이수 기준 평균평점 4.0이상(4.5만점)-2019년부터 삭제 ② 토익 800이상 / 토플 ibt 70이상 / 텡스 695이상 / 토익스피킹 7급 이상 / 오픽 IH(Intermediate High)이상 ③ 기업 및 정부기관의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입상한 경우(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) ④ 각종 국가고시(5급, 7급 및 9급 공무원 공채)합격 및 국가자격증(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등)취득 (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) ⑤ 각종 자격증 취득 (정보처리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,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,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, 정책분석평가사 2급 이상)</p>	<p><b>제4조(졸업논문면제)</b> 논문면제요건총점제를 시행하며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면서 환산점수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제출을 면제하고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다.</p> <p>① 환산표(별첨1)를 참고하며, 점수 합산 시 소항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② 명기되지 않은 항목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일정 점수를 부여함 ③ 자격증의 경우 입학 이후 취득분으로 한정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 ④ 외국어 능력검정의 경우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유효해야 한다.</p> <p>■ 환산표 (#별첨1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항목</th> <th>소항목</th> <th>기준</th> <th>환산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취업</td> <td rowspan="2">공기업, 공단 등</td> <td>채직(채용형인턴 포함)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체험형인턴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국가-지방공무원</td> <td>합격</td> <td>100</td> </tr> <tr> <td>전문 자격(면허)</td> <td>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등</td> <td>취득</td> <td>1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항목	소항목	기준	환산점수	취업	공기업, 공단 등	채직(채용형인턴 포함)	100	체험형인턴	40	국가-지방공무원	합격	100	전문 자격(면허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등	취득	100	제4조 내용 전면개정
항목	소항목	기준	환산점수																
취업	공기업, 공단 등	채직(채용형인턴 포함)	100																
		체험형인턴	40																
	국가-지방공무원	합격	100																
전문 자격(면허)	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등	취득	100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(안)				비고
조항	조항				
	항목	소항목	기준	환산점수	
	외국어	토익	900점 이상	70	
			800~899점	60	
		토플	105점 이상	70	
			91~104점	60	
		텝스(new텝스)	773(435)점 이상	70	
			641(350)~772(434)점	60	
		오픽	IH 이상	70	
			IM3 이상	60	
		텝스스피킹	67점 이상	70	
			58~66점	60	
	토익스피킹	160점 이상	70		
		140~150점	60		
	JPT	800점 이상	70		
		700~799점	60		
	JLPT	1급	70		
		2급	60		
	신 HSK	5급 이상	70		
		4급	60		
	일반 자격증	컴퓨터활용능력	1급	50	
			2급	30	
		정책분석평가사	1급	50	
			2급	40	
		KBS한국어능력시험	2-급 이상	50	
			3+ 급	40	
		한국사능력검정	1급	40	
			2급	30	
	정보처리	기사	40		
		산업기사	30		
	사회조사분석사	2급	40		
	공모전	공공기관 주최	입상	70	

현행 조항	개정(안) 조항	비고
제5조(출제 및 평가위원 위촉) 출제 및 평가위원은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학과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된다.	제5조(출제 및 평가위원 위촉) “좌 동”	
<b>제6조(시험과목)</b> ① 시험 문제는 행정학 2개 전공영역(행정학, 정책학)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(논술)으로 출제한다. ② 출제기준 및 평가방법은 개강 후 45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 ③ 시험 문제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.	<b>제6조(논문작성)</b> ① 조직, 인사, 재무, 정책 등 행정학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를 학생이 자유롭게 정한다. ② 논문의 형식은 학사학위 논문 형식으로 하며 분량은 20~25페이지로 한다.	제6조 전면개정
<b>제7조(평가기준)</b> ①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. ② 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,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 ④ 불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며 2차 시험도 불합격할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을 불허한다.	<b>제7조(평가기준)</b> ① 100점을 만점으로,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. ② 논문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,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 ④ 논문작성 시 표절률은 10% 이하로 하며, 표절방지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.	
제8조(기타) 시험과 관련하여 위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교수가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	제8조(기타) “좌 동”	
부칙 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		
	부칙 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매 학기 개강 후 45일 내에 공시한다.	